

防災ニュース

개정 소방법령 해설 -1-

본 자료는 일선소방담당 공무원을 위해 내무부에서 발행한 교육교재 중에서 협회의 안전 점검 업무와 관련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였으며, 수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임.

-개정 목적-

- 현실과 고마된 과도한 기술 수준의 완화, 현실화
- 불합리한 기술규정의 보완
-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개선
- 소방 안전 협회의 설립

(위험물 관계 사항)

종 전	현 행	비 고
(1) 일반 주택 및 영세업소의 위험물 취급 규제의 완화 ◦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허 가(법 제15조) • 시·도지사	 ◦ 설치 허가제 일부 폐지 • 일반주택의 난방용 위험물 저장시설 단, 공동주택이라도 주거 단 위로 난방용 시설을 한 경우 도 포함.	
◦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기 준(법 제16조) •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 적용	 ◦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기준 일부 완화 • 일반주택의 난방용 위험물 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시· 군 조례로 위임.	

신축건물 설치시는 건축허가
신청시 관할시장, 군수에 신고
기존건물 설치시는 관할 소방
서장, 군수에 신고

(2) 취급소의 개념 정립

- 취급소의 구분(령 제46조)
 - 주유 취급소—고정된 주유
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등
의 연료 탱크에 직접 주유
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
하는 취급소
 - 판매취급소—점포에서 판
매하기 위하여 지정 수량
의 5배이하의 위험물을 취
급하는 취급소

◦ 취급소의 구분(령 제46조)

- 주유 취급소—종전과 같음
- 제1종 판매취급소—점포에
서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
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
량의 5배 미만의 위험물을
취급하는 취급소
- 제2종 판매취급소—이동 탱
크에 의하여 위험물을 고정
된 저장시설이 설치된 수요
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지
정수량의 5배이상 15배미만
의 위험물(제2·3석 유류에 한
함)을 취급하는 취급소

<p>(3) 옥내탱크 저장소의 설치</p> <p>기준 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옥내 탱크 저장소의 위치 (령 제56조) ◦ 소화설비(규칙 제120조) ◦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70도 미만의 액체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장소는 제3종 소화설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옥내 탱크 저장소의 위치 ◦ 옥내 탱크는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 설치 가능한 위험물 ◦ 제2류 위험물 중 황린, 황화린, 적린 및 괴상의 유황 ◦ 제3류 위험물 중 성석회 ◦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의 것. ◦ 제6류 위험물 ◦ 소화설비(규칙 제120조) ◦ 지정 수량 10㎘ 미만을 취급시 — 제4종 소화설비 	<p>기기 허가받아 지하층 등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는 이 영에 의한 설치로 봄.</p>
--	--	---